



Single Touch Payroll

고용주용



준비를 위한 확인 목록

Single Touch Payroll 준비를 위해 귀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STP를 통해 보고할 방법을 결정하십시오

- STP-가능한 지급 소프트웨어 사용 - STP 상품 등록 방법은 api.gov.au/productregister 참조. 등록된 세무사나 BAS 대리인 등 제3자, 또는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에 귀하를 위해 STP를 통해 보고하도록 요청.
- 4인 이하의 직원을 둔 고용주만을 위한 옵션: 무료 또는 저비용 솔루션 선택 - ato.gov.au/stpsolutions 참조. 또한 고용주를 위한 할인 옵션 목록이 아래에 있으므로, ato.gov.au/concessionalreporting 참조.

지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, 해당 제공업체에 연락하십시오

- 제공업체는 어떤 상품이 STP를 제공하는 지 알려줄 것임.
- 귀하의 STP 이행을 위한 제공업체의 지원 방법을 확인.
- 준비가 되면 귀하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.
- 제공업체의 소식지 구독 - 이메일이나 뉴스레터, 웹 업데이트.

직원들과 STP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

- 해당 사업체에서 알맞은 사람들 - 특히 지급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STP에 대해 알고 있는 지 확인.
-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, 그들의 연금 자격을 정확히 계산하며, 연체금을 제대로 해결하고, 직원들의 이름과 주소, 생년월일을 포함한 정보를 정확히 관리.

보고를 시작하십시오

- 실수 할 경우, 정정할 수 있음. 첫 해는 이행년도이므로 보통은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음.
- 첫 STP 지급 상황 보고서를 ATO에 보내기 전에 ATO의 보고 시작을 위한 확인 목록을 참고. 이것은 해당 파일의 성공적인 ATO 송부를 도울 것임.
- 보고할 내용, 정정 방법, STP 자료의 마무리를 포함하여 STP 필요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ato.gov.au/employerguide에서 고용주를 위한 STP 보고 안내서 참조.

필요할 경우 추가 시간을 신청하십시오

- 19인 이하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9월 30일 전에 보고를 시작해야 함. 그 때까지 준비될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 연기를 신청해야 함.
- 밀접하게 관련된 직원을 둔 고용주의 경우, 2020년 7월 1일까지는 해당 직원에 대한 보고를 시작할 필요가 없음. 밀접하게 관련된 직원 현황 보고서는 ato.gov.au/stpresources 참조.
- 2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STP를 통해 보고하거나, 이미 연기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. ato.gov.au/stpdeferrals 참조.

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

- 등록된 세무사나 BAS 대리인과 상의.
-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전화 13 14 50번에 연락하십시오.
- 정보 확인 웹사이트: www.ato.gov.au/stpkorean